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규 혁신도시 지정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등 》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5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제220015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회부 경과	2
4. 검토의견	4
가. 혁신도시 지정시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정 등(안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4
나.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연구기관 포함 명시(안 제25조제1항)	11
다. 기업·대학의 지방이전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 이전 우선 고려 (안 제24조제4항 신설)	14

I.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제220015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희승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4. 6. 5.

다. 회 부 일 : 2026. 3.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문화·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공기관 본사 중심으로 이뤄져,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력의 추가적인 이주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보다 내실있는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신설, 제25조제1항 등).

3. 회부 경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 소관 부처로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지정된바, 2024년 6월 5일 발의된 동 개정안은 같은 해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졌음.

이후 제25차 지방시대위원회(2026. 2. 2.)에서 공동 소관 부처에 국토교통부를 추가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되고, 정부로부터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이 제기된바, 국토교통부 소관에 해당하는 동 개정안이 2026년 3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회송됨.

대표발의	제출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회송일)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상정	
박희승의원	2024. 6. 5.	2024. 6. 27.	2024. 8. 19.	-	2026. 3. 6.

4. 검토의견

가. 혁신도시 지정시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정 등(안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u>산업단지</u>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생략)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③·④ (생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 ----- ----- ----- <u>혁신도시·산업단지</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생략)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등 우선적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현행	개정안
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u>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 -----<u>인구감소지역으로의</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이 경우 <u>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6조제3항 후단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2조제1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혁신도시¹⁾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도시법”이라 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²⁾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로,

이 법 제26조³⁾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되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이 법 제2조제12호⁴⁾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개정안에 따라 향후 혁신도시를 신규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시책⁵⁾ 마련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경우,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해당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기반 확충 등의 특례(참고 3)에 더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가 부가될 수 있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혁신도시⁶⁾의 경우 향후 이전 기관의 입지 결정 시 종전의 우선적 지위를 지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2026년 4월말을 기준으로 혁신도시는 총 10개 도시가 지정(대전·충남 제외)되어 있고, 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참고 1 및 참고 2).

기존의 혁신도시 지역은 지역발전거점 조성이라는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관한 지역 간 이견⁷⁾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이전 원칙 변경과 관련된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지역 등으로 이전 허용 특례	제2200143호 ('24.6.5.)	행정안전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제2200145호 ('24.6.5.)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제2200152호 ('24.6.5.)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비수도권) 이전	제2201379호 ('24.7.4.)	국토교통위원회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 원칙 우선	제2201808호 ('24.7.16.)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도 가능	제2201809호 ('24.7.16.)	국토교통위원회

7)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배치 촉구, 2023.1월, 7월)
 ↔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공동성명(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촉구, 2023. 3월, 5월, 11월)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일)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 간 균형 강화	제2204084호 ('24.9.19.)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도 가능	제2213881호 ('25.11.4.)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제2213882호 ('25.11.4.)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	개별이전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2217045호 ('26.2.25.)	국토교통 위원회

아울러, 혁신도시는 해당 도시의 인구 규모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주변지역의 인구를 주로 흡수하여 전국적인 인구 분산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상존하고 있는바⁸⁾⁹⁾, 개정안에 대하여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인구 규모에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입지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이전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8) 「혁신도시는 외부지역 인구 유입에 실패하였는가?: 혁신도시 정책의 도외 인구 순유입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 임소현·지수호, 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4호(2024. 2.),

9) 참고로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은 2015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이며, 혁신도시의 인구는 수도권에서의 유입인구(16%)보다 인근 모도시에서의 유입인구(51%)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는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음.

* 김태환 외,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국토정책 Brief』 No.775, 국토연구원, 2020. 8. 5.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전효과를 감안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이전 원칙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연구기관 포함 명시(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 <u>공공기관의</u> <u>소속기관 및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u> <u>으로</u> -----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생략)

개정안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의 구조가 본사-지사로 이원화되고 수도권 잔류 인력 등¹⁰⁾을 통해 핵심 기능을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1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1차 이전대상공공기관 종사자 중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인력은 약 2,000명이고, 이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잔류 인력은 493명이었음(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권영진의원실 제출 자료).

이에 개정안은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전 조직이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전대상공공기관의 기능적 효율성·통합성을 유지하고 혁신도시 육성·발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11)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기관 또는 연구기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으로 이전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결정되고,

「혁신도시법」 제4조제2항12)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본사가 아닌 조직에 대해서도 지방이전을 수립·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기업·대학의 지방이전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 이전 우선
고려(안 제2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업 및 대학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은 기업 및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4항 신설).

현행법 제24조¹³⁾에 따라 수도권 기업 및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산업통상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¹⁴⁾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2024년간 총 1,547개 기업에 2조 5,727억원¹⁵⁾의 국비가 지원되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기업·대학 소속 종사자 및 학생 등이 유입되어 지역이 활성화되고 인구 감소 추세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4조는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민간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법 체계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1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30~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균형발전상위지역	- (설비) 4%	(입지) 5% (설비) 6%	(입지) 9% (설비) 8%	45 : 55
균형발전중위지역	- (설비) 6%	(입지) 15% (설비) 8%	(입지) 30% (설비) 10%	65 : 35
균형발전하위지역	- (설비) 9%	(입지) 25% (설비) 12%	(입지) 40% (설비) 15%	75 : 25
산업위기대응지역	- (설비) 12%	(입지) 30% (설비) 20%	(입지) 50% (설비) 25%	75 : 25

*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 투자건당 100억원/기업당 200억원

1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개사/억원)

구분	'04	'05~'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기업수	18	생략	87	81	93	89	71	72	69	62	55	54	1,547
지원금	132	생략	1,113	1,192	1,434	1,700	2,073	2,553	1,958	2,056	2,051	2,245	25,727

※ 자료: 기업투자정보시스템(COMIS)

민간에 대한 의무 부여와 관련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상 혁신도시 지정 등 입지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이전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는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전효과를 감안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입지 원칙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교육부는 대학의 지방 이전 시 입지와 관련하여, 개별 대학이 학교 운영계획과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 1

혁신도시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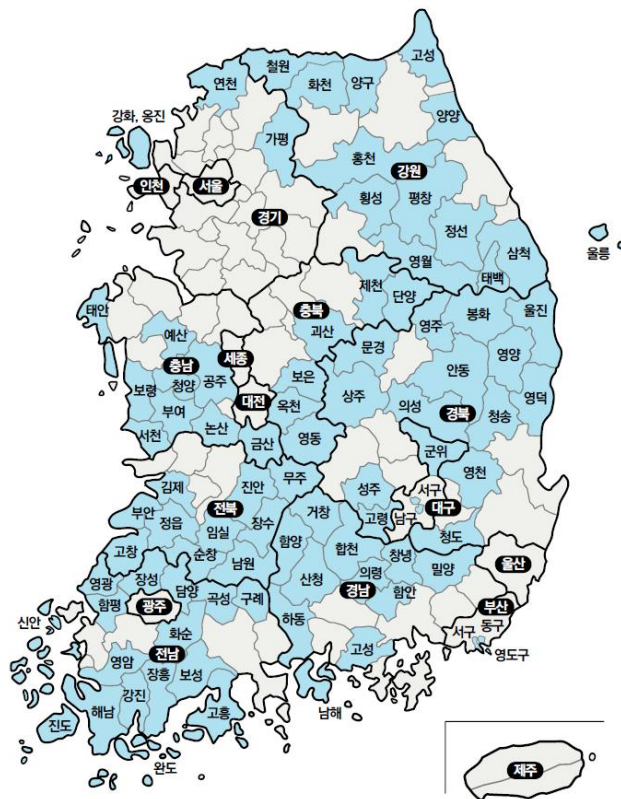
지역	위치	면적 (km ²)	인구(천명)		이전완료 공공기관 (개)	사업비 (억원)
			계획	현황 (‘25.12월)		
부산	영도구, 해운대구, 남구	0.935	7	7.2	13	4,127
대구	동구	4.216	22	16.7	10	14,501
광주·전남	나주시	7.361	50	39.5	16	14,175
울산	중구	2.991	20	19.4	9	10,390
강원	원주시	3.585	31	29.4	11	8,396
충북	진천군, 음성군	6.899	39	31.8	11	9,969
전북	전주시, 완주군	9.852	29	29.0	12	15,229
경북	김천시	3.812	27	23.4	11	8,676
경남	진주시	4.093	38	33.7	11	10,577
제주	서귀포시	1.135	5	4.4	6	2,939

*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20.10월)은 완료됐으나, 구체적인 입지, 면적 등이 정해지는 후속 절차(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는 이뤄지기 전임.

참고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주: 군위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당시('21.10.19.)에는 경상북도에 속했으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23.7.1)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3

인구감소지역 주요 지원제도 현황

□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근거법령·규정		지원 내용
인구감소지역지 원특별법	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 기부채납·무상임대 방식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	· 유·초·중·고등학교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운영 및 필요비용 지원 ·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 부여 · 교육시설 설치 및 해당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의료	· 거주지 방문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 수행 및 행·재정적 지원 · 필수의료 제공 가능 의료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 · 의료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지원
	주거 교통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노후주택 개선 비용의 일부 지원 · 섬 주민, 섬 주민 차량에 대해 운임·요금 지원
	문화	·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촉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기타	·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의 요건 완화 · 노후·유희시설 관리실태의 주기적 점검 및 활용범위 확대 · 산업단지 활력 증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 입주 사업자에 대한 승인·허가 신청 사무 지원 ·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 중 지방대우원화가 정한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가능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우선 지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수도권 일부 인구감소지역에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기준재정수요액(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보정
지방세특례제한법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취업, 체류자격 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행안부고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95% 배분

자료: 행정안전부